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06. 07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127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05. 23.

라. 회부일자 : 2023. 05. 25.

2. 제안이유

-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'정릉1동 커뮤니티센터'를 운영하고 있는 「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」 과의 위탁계약이 2023.12.31.종료됨에 따라, '정릉1동 커뮤니티센터'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현황

- 시설명 :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8가길 6
- 규 모 : 대지 271m², 연면적 233.53m² (지상 2~3층)

나.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
다. 위탁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,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·의결

라. 위탁사무 :

-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5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정릉1동 커뮤니티센터’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)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2023.12.31.자로 “정릉1동 커뮤니티센터”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3년간(2024. 1. 1. ~ 2026. 12. 31.)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. 위탁대상 운영현황 다음과 같음.

<정릉1동커뮤니티센터 현황>

시설명	시설현황	소요예산	위탁기간	운영주체	운영조직
정릉1동 커뮤니티센터	- 위치 : 성북구 정릉로38가길 6 - 규모 : 대지 271㎡ 연면적 233.53㎡ (지상 2~3층)	71,945천원 (구비)	2021.1.1. ~ 2023.12.31. (3년)	아름다운정릉1동 사람들협동조합 (조합장 이진평)	센터장 1

<시설현황>

구 분	연면적	명 칭	운영내용
계	359.25㎡		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「주민커뮤니티 센터」
지상1층	125.72㎡	어르신 사랑방	· 정릉1동경로당 - 어르신 여가생활공간 (제외)
지상2층	135.08㎡	주민복합문화공간	· 건강 측정, 인터넷, 여가문화교실, 대관, 카페테리아 운영 등
지상3층	98.45㎡	강당 및 소규모프로그램실	주민 여가프로그램실, 소규모프로그램실 운영

□ 민간위탁 적정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서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의 민간 위탁 사무 내용 중 제1호와 제6호1)에 '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'와 '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사무가'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.
-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는 어르신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세대간 통합을 도모하고 세대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으로써,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성과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,
- 구의회 동의 후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7조2)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,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,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사무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 (개정 2020.12.31.)